# 2. 대학평의원회규정

제정일:2007.2.2 개정일:2008.1.25. 개정일:2012.7.4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78조에 따른 대학평의원회(이하 "평의원회"라 한다)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<u>제3호 내지 제5호</u>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.

- 1.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- 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대학의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대학의 예 · 결산에 관한 사항
- 6.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<개정2008.1.25 >

#### 제2장 조 직

제3조(구성 및 자격) ①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교원 3명
- 2. 직원 3명
- 3. 학생 1명
- 4. 동문 2명
- 5.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
- ②교원 평의원은 5년이상, 직원 평의원은 2년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.
- ③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.

제4조(위촉) ①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
- ②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- ③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- ④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임원)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
-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-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④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**제6조(임기)**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③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,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④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,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#### 제3장 회 의

**제7조(회의)**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개최한다.

②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
- 1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- 2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3.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
제8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제9조(회의록) ①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회의록에는 출석의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10조(출석 및 자료제출)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1조(비밀유지)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2조(예산)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간사) ①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- ②제1항의 간사는 사무처 직원으로 한다.
- ③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· 관리한다.

# 제4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

제14조(개방이사추천위원회) ①법인정관 제 20조5항에 의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'추천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<개정2012.7. 4 >

- ②추천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1.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2인
- 2. 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에서 추천한 자 3인 <개정 2012.7.4 >
- ③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<조신설 2008.1.25 >
- ④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<조신설 2008.1.25 >

제15조(개방이사 후보자) ①개방이사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.

- ②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학력,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, 추천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- ③<u>추천위원회</u>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개정 2008.1.25 >

제16조(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)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.

제17조(개방감사 추천) 개방감사 후보자의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감사1인에 대하여 단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
### 제5장 보 칙

제18조(규정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19조(내규)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**제20조(준용)**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- ① 이 규정은 2007 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은 2008 년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이 규정은 2012 년7월 4일부터 시행한다.